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행정지원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(안 제3조 관련 별표 2)

○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

- 5급 상당 10% → 15% 이내 (증 5%)
- 6급 상당 40% 이내 → 45% 이내 (증 5%)
- 7급 상당 20% 이내 → 25% 이내 (증 5%)
- 8급 상당 이하 30% 이상 → 15% 이상 (감 15%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○ 일반직 계 : 1,576명

- 5급 : 68명 → 69명 (증 1명) (본청 32명 → 33명)
- 6급 이하 : 1,497명 → 1,496명 (감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범위 내 (총 정원 변동 없음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2. 11. 4. ~ 2022. 11. 7.

4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(1)% 이내	(7)% 이내	(22)% 이내	(34)% 이내	(30)% 이내	(5)% 이상	(1)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
비 율	(15)% 이내	(45)% 이내	(25)% 이내	(15)% 이상

비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86	1,586			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76	1,576			
3급	1	1	0	0	0
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496	1,496			
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9	5	4		
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8	4	4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2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별정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5급 상당</td><td>6급 상당</td><td>7급 상당</td><td>8급 상당 이하</td></tr><tr><td>비 율</td><td>(10)% 이내</td><td>(40)% 이내</td><td>(20)% 이내</td><td>(30)% 이상</td></tr></table>						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	비 율	(10)% 이내	(40)% 이내	(20)% 이내	(30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(10)% 이내	(40)% 이내	(20)% 이내	(30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기관별 직급별</td><td>총 계</td><td>본 청</td><td>구의회 사무국</td><td>보건소</td><td>동</td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1,586</td><td colspan="4">1,586</td></tr><tr><td>정무직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1,576</td><td colspan="4">1,576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8</td><td>6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68</td><td>32</td><td>2</td><td>14</td><td>20</td></tr><tr><td>6급 이하</td><td>1,497</td><td colspan="4">1,497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</td><td>2</td><td colspan="4">2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9</td><td>5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상당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6급상당 이하</td><td>8</td><td>4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		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계	1,586	1,586				정무직	1	1	0	0	0	일반직 계	1,576	1,576				3급	1	1	0	0	0	4급	8	6	1	1	0	5급	68	32	2	14	20	6급 이하	1,497	1,497				전문경력관	2	2				별정직 계	9	5	4			5급상당	1	1				6급상당 이하	8	4	4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586	1,5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0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576	1,5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0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1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8	32	2	14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1,497	1,4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9	5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8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개정안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2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별정직공무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5급 상당</td><td>6급 상당</td><td>7급 상당</td><td>8급 상당 이하</td></tr><tr><td>비 율</td><td>(15)% 이내</td><td>(45)% 이내</td><td>(25)% 이내</td><td>(15)% 이상</td></tr></table>						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	비 율	(15)% 이내	(45)% 이내	(25)% 이내	(15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 상당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(15)% 이내	(45)% 이내	(25)% 이내	(15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3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기관별 직급별</td><td>총 계</td><td>본 청</td><td>구의회 사무국</td><td>보건소</td><td>동</td></tr><tr><td>총 계</td><td>1,586</td><td colspan="4">1,586</td></tr><tr><td>정무직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>일반직 계</td><td>1,576</td><td colspan="4">1,576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8</td><td>6</td><td>1</td><td>1</td><td>0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69</td><td>33</td><td>2</td><td>14</td><td>20</td></tr><tr><td>6급 이하</td><td>1,496</td><td colspan="4">1,496</td></tr><tr><td>전문경력관</td><td>2</td><td colspan="4">2</td></tr><tr><td>별정직 계</td><td>9</td><td>5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상당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6급상당 이하</td><td>8</td><td>4</td><td>4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		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계	1,586	1,586				정무직	1	1	0	0	0	일반직 계	1,576	1,576				3급	1	1	0	0	0	4급	8	6	1	1	0	5급	69	33	2	14	20	6급 이하	1,496	1,496				전문경력관	2	2				별정직 계	9	5	4			5급상당	1	1				6급상당 이하	8	4	4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586	1,5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0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576	1,5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0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1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9	33	2	14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1,496	1,4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9	5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8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개정안은, 총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5급 정원과 6급 이하 정원의 조정을 그 내용으로 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총 정원을 증원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직렬별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의 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건비 차액의 발생액이 연 1억원 미만에 해당됨

4. 작성자

-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중환